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0년 4월 8일
- 나. 제안자: 김병진 의원 외 9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4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강선영 의원)

□ 제안이유

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당연직 및 위촉직에 관한 구성(안 제4조)

- 다.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
- 라.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운영 및 간사의 역할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(안 제10조)
- 사. 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- 다.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-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해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대해 정함(안 제3조).
- 협의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, 위원장은 구청장, 부위원장

은 경찰서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
-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해 규정(안 제5조)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등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-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,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강서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지정함(안 제9조)
- 협의회 상정안건 수렴 및 조정과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·단체 실무책임자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둠(안 제10조)
-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다. 종합 의견

-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,

-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경찰의 치안업무 등의 국가 사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41조(경비의 지출)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. 다만,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,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.